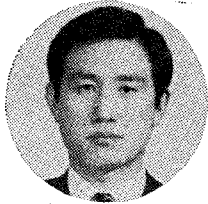


對美通商과 知的所有權 마찰 民과 官이 合心하여 適切히 對處해야



金 允 培

〈辨理士·全國商品模造防止委員會副委員長〉

目 次

- I. 問題의 제기
- II. 知的所有權에 關한 마찰 發生 두가지 類型
 - 1) 制度的 측면
 - 2) 商品模造 및 特許紛爭의 측면
- III. 美國側의 對應조치
- IV. 知的所有權마찰의 影響
- V. 知的所有權마찰에 對한 우리의 對應策

I. 問題의 제기

지난 1960年代 以後 추진해온 對外指向的인 經濟성장정책의 結果로 우리나라의 年間 交易量이 약 6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에서 對美交易부문이 차지하는 몫이 3분의 1을 넘어 서고 있다.

우리측으로서는 미국은 제1의 交易상대국이고, 미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日淸번개의 貿易 파트너가 되는 셈이며, 우리의 對美交易量은 나 날이 급성장하고 있어 미국의 일부 기업들은 이제 우리를 그들의 새로운 경쟁상대로 보기 시작 하고 있다.

미국의 對韓通商政策은 종래의 軍事戰略의 血盟이라는 단순 우호동맹정책으로 부터 실질적인 商去來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實利的 통상정책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변화는 지난 1984년을 고비로 해서 두드러지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對美通商관계는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에 따라 통상 파트너인 미국과 여러가지 마찰을 빚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각종의 知的所有權마찰이 對美通商과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우리나라의 일부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와 덤핑提訴, 半意圖的인 높은 덤핑率로의 判定, 相計관세의 강화, 日淸特혜관세(GSP)중지 그리고 知的所有權 門戶의 개방요구와 함께 우리나라에서의 美國民 所有의 特許·商標등 工業所有權과 著作權등에 대한 模造행위 금지 要求등을 거듭 주장해 오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국의 새로운 通商政策과도 무관하지 않은바 미국은 이미 84通商法の 발효후 知的所有權保護가 미약한 국가에 대하여 通商次元에서의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연유한 韓·美間의 지적소유권 마찰은 갈수록 첨예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책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II. 知的所有權에 關한 差 發生 二가지 類型

일반적으로 韓·美間의 知的所有權 差 發生은 制度的 측면과 現行制度下에서의 特許侵害를 비롯한 模造行爲等 二가지 類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制度的 측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등을 포함하는 知的所有權 분야에 있어서도 최선진국에 속하는 미국은 선진국들과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실시하고 있는 物質特許制度를 우리나라에서도 채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國際著作權保護協約(「베른」條約)에도 조속히 가입할 것을 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半導體칩의 보호까지도 요구하고 나서는 형편이다.

① 物質特許制度的 導入要求

모름지기 각국의 공업소유권제도는 自國의 利益에 기초하고 있다. 國內産業發達이라는 지상과제를 앞에 놓고 볼때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관련산업의 제반 여건상 物質特許制度的 導入은 아직 그 時期가 이른 감이 없지 않으며 정작 이 제도를 채택하려면 이 分野에 대한 오랫동안의 종합적인 연구를 거쳐 段階的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아는 바와 같이 日本의 경우에 있어서는 1950년에 特質特許制度的 導入을 논의한후 25년 만인 1975년에 가서야 이 제도를 채택시행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物質特許導入은 通商政策의 희생물이 될 수 없으며 先進國의 要求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서둘러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1960년대에 西歐스타일의 特許法등을 제정해놓고도 自國産業우선保護라는 美名하에 大統領令으로 그 效力을 일시 정지하는 식으로 하여 오늘날까지 特許制度施行

을 留保(高標制度는 既施行中임)하고 있다.

② 國際著作權保護協約에의 加入要求

현재 관계 부처에서 條約加入을 전제로한 著作權改正案의 마련을 검토하고 있어 몇년내에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③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保護要求

1984年 11월부터 特許廳은 「컴퓨터관련 發明審査基準」을 새로 제정하여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관련 發明중 特許要件을 갖춘것은 일부나마 特許로 보호될 것이고, 일부는 새로 마련될 著作權法改正案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差 發生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④ 半導體칩의 保護要求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多角的으로 검토하여 對應方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 商品模造 및 特許紛爭의 측면

기존 知的所有權制度하에서 商品등의 模造행위를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中小企業규모이하의 영세업체들이 국내에 등록된 他國人的 知的所有權을 무단으로 사용·모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허침해나 상표도용 그리고 소프트웨어등의 무단복제가 그 代表的인 케이스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이중에는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未登錄商標에 대한 도용, 모방이 포함된다.

① 국내에 登錄된 美國商標權등의 侵害問題

의류, 가방, 가죽제품등 패션계통에서 미국상표가 無斷使用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상표권침해행위로서 공업소유권의 使用秩序確立이라는 次元에서도 시정되어야 하고 또한 사실상 他人의 商標盜用이 국내시장의 교란과 소비자의 사치풍조 조장외에는 國益에 전혀 도움이 안되므로 汎國民的次元이나 國家政策的 次元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② 美國에는 登錄設定되어 있고, 또 周知·著名한 것이 國內에는 아직 登錄되어 있지 아니한 未登錄標章의 盜用과 模造行爲 問題

이는 商標法의 보호대상이 아닌 不正競爭防止法의 規制대상이나 1961년에 制定된후 한번도 손질하지 아니한 未登記된 現行法으로는 實效가 낮아 관련 企業이나 商人들의 自發的인 模造防止意識등에 의존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③ 우리나라 輸出品이 美國에서 押留되는 問題

原產地虛偽表示商品이나 미국에 등록된 商標權 및 著作權을 侵害하는 商品은 미국세관에서 압류하고 있으며 선적항으로 되돌려 보내던 종래의 方針대신에 폐기 또는 압류등의 강경책으로 인하여 일부 수출품이 세관등에 묶여 있거나 폐기처분을 당하고 있다.

④ 美國市場에서의 流通過程上的 特許紛爭

일단 미국에 수출된후 市場의 유통 과정에서 特許侵害問題가 생겨 법정으로 옮겨져 特許紛爭을 일으키고 있다.

Ⅲ. 美國側의 對應조치

미국은 최근 關稅法 및 通商法을 개정하여 미국민 소유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미국에의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이에 대한 갖가지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 원산지허위표시 상품이나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미국세관에서 압류 또는 폐기처분하고 있는 바, 외국의 模造商品이 미국에 수입될 때 선적항으로 되돌려 보내던 종래의 방침을 바꾸어 압류 또는 폐기처분등 강경조치를 취함은 물론 외국으로부터의 模造商品의 수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調查團을 모조품 다량 생산국에 파견하여 갖가지 정보를 입수함과 동시에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국에 대한 수입금지, 수입제한 등 각종 규제와 GSP 축소등 관세장벽을 설치하고 높은 덤핑율에 대한 덤핑관세 부과등 갖가지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 계속적인 조사단의 파견과 현지공관등의 제보를 종합하여 다량으로 모조품을 생산하는 국가를 分類, 지목하고 이를 국가들에 대한 집중감시체제를 갖추어 놓기까지 하고 있다.

미국은 외국에서의 미국상품들에 대한 모조행위 방지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각종조치와 함께 IACC(國際模造防止協會)등 민간기구의 활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모조품생산과 거래활동을 저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조품생산과 이해관계가 큰 미국의 大企業들이 중심이 되고 영국,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IACC는 각종회의, 세미나, 조사단 현지파견등을 통하여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對策을 미국정부당국에 건의하여 미국의 對外通商政策에 반영시키고 있다.

미국의 관련기업들은 IACC등 민간기구를 통하여 의회, 상무부, 국무부,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 및 상표청, 저작권등록국, 관세청 등에 모조품 생산 및 수출국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와 관련사항의 立法조치를 건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를 지목하거나 우리 企業들을 겨냥하는 조치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상무부 및 ITC등 미행정부 자체도 模造행위가 극심한 국가에 대한 외교적, 통상적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서 84通商法을 들 수 있다.

Ⅳ. 知的所有權마찰의 영향

미국과의 지적소유권 마찰은 곧바로 우리경제와 산업계에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과 파급효과가 철저히 검토되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이러한 분류로 인하여 國益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손을 써야 할 것이다.

미국이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物質特許의 조기 개방은 藥品, 農藥, 化學工業등 정밀화학산업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他産業과는 달리 새로운 物質을 개발하는 物質發明분야는 장기간의 연구와 막대한 研究開發사업

비가 들기때문에 미국등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유치한 技術開發 능력밖에 없는 우리 精密化學 産業界를 하루 아침에 선진국의 우수기업들과 경쟁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의 새로운 物質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일이 걸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상급 製藥會社의 연간 매출액의 몇배 이상을 開發費로 투입해야 할 만큼 막대한 비용이 들고 또 다수의 고급기술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보호는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先進企業과 경쟁코자하는 국내의 先發企業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措置이기는하나, 관련분야의 기술개발에 대한 파급 효과가 적은 일반 소프트웨어를 장기간 보호해주는 것은 한창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電子産業계의 기술개발의 싹을 자칫 짓밟을 우려가 있다.

한편 著作權의 完全開放은 가뜩이나 불황인 우리 出版文化界의 존립과도 관련이 있으며 더구나 이의 조기개방은 갑작스런 상당액의 로열티 지불 등으로 인하여 우리 文化와 科學技術의 지속적인 성장을 억누르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V. 知的所有權마찰에 대한 우리의 對應策

한·미간의 지적소유권 마찰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미국과의 通商마찰을 어느정도 줄여 輸出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를 되살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지상 과제인 것이다.

지적소유권마찰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부문이 서로 분담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우선 정부당국은 物質特許등의 경우에 있어서 이의 조기개방이 물고 울 우리 정밀화학산 업계가 받게될 충격을 고려하여 特質特許의 개방전에 우리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설치한 후에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토록 對 外교섭을 벌이며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저작권보호문제에 있어서 全面開放보다는 非學術的인 순수 文化藝術創作 부문을 먼저

개방한 후 여타 學術관련 저작권은 시일을 두고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이 知的所有權의 全面開放이라는 명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응급조치적인 단기대책과 아울러 연관산업의 장래를 가름할 근본적인 장기대책도 아울러 미리 세워두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민간부문이 취해야 할 대응조치로는 관련업계 스스로가 언제까지나 온실 속의 보호조치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과감하게 R & D에 투자하여 自生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내기업끼리의 부질없는 과당 廣告宣傳경쟁을 탈피하고 잉여금의 전입이나 아니면 관련 協會, 組合등의 居中조정예 의하여 과당경쟁예 의해 파생된 과도한 광고비를 줄여 이를 R & D에 투자하여 기술개발경쟁력을 키우는 방안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特質特許의 경우에 지금 당장 도입이 결정된 다하여도 立法준비기간이나 특허심사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등을 감안하면 실제로 업체가 받게 될 영향은 5~6년 이후가 될 것이므로 너무 서두를 일은 아닌 것이다.

模造商品의 경우에도 남의 유명상표등에만 편승하지 말고 固有상표를 자체 개발하여 자기「브랜드」를 확보하며, 특히 외국의 人氣商品을 원용할 때에도 이를 그대로 모방할 것이 아니라 장점만을 취하고 이를 개선하여 새로운 형상이나 디자인으로 바꾸어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한편 이것이 단순 模造행위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소비자인 국민 스스로도 많은 반성이 있어야 하고 內國産業보호라는 愛國의次元에서도 外製選好풍조등 종래의 소비성향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外製模造商品의 범람은 부끄러운 일이며 이로 인한 國益손상은 말할 수 없이 크므로 민간경제단체등의 주도 아래 우리 스스로가 모조상품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끝으로 對外通商과 연계되어 있는 知的所有權마찰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民과 官이 합심하여 그 遠因과 近因을 가려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